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형사사건 기록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·등사 수수료 기준이 법원의 수수료 기준에 비해 과다하고,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「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」(대법원규칙)의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(단서 신설)를 마련하고,

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인 ‘자동 천공압납함’을 ‘구멍을 뚫고 눌러찍음’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기관과 협의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. 0. ~ 0. 0.) 예정

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자동 천공압납함”을 “구멍을 뚫고 눌러찍음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「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」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 별표 수수료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인증의 방식 등) ① ~ ③(생략)	제6조(인증의 방식 등) ① ~ ③(생략)
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<u>자동 천공압납함</u> 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<u>구멍을 뚫고 눌러찍</u> <u>음</u> -----.
제8조(수수료) ① ~ ⑤ (생략)	제8조(수수료) ① ~ ⑤ (생략)
⑥ 사건기록 중 도면·사진·디스크·테이프·필름·슬라이드·영상녹화물·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(청취·시청을 포함한다)·등사(복제·인화를 포함한다) 수수료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를 준용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「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」</u> <u>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</u> <u>하고 있는 수수료가 신청인에게</u> <u>유리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「공</u> <u>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

시행규칙」 제7조의 별표 수수료
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